

[예비공고] 2023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모집 공고

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자원의 특성을 결합한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, 로컬창업에 필요한 체계적 계획 및 현장 경험을 갖춘 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『로컬콘텐츠 중점대학』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년 1월 20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※ 본 모집공고는 대학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예비공고문으로, 본 모집공고시 (1.30일 예정)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1

사업개요

- (배경) 지역가치 창업가 '로컬크리에이터'의 창업과 '로컬브랜드'로의 도약을 위해, 지역정체성(Identity)기반 창업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 필요
- (목적) 지역문제 해결 의지 및 로컬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활용하여 로컬 및 융·복합적 소양을 갖춘 지역기반 예비창업자 양성
- (내용) 청년로컬창업자가 충분한 준비 후 창업할 수 있도록 '대학'을 혁신창업기지로 활용하여 현장형 교육훈련 추진
 - 대학·전문대학·대학원 중 전담조직·공간·창업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발하여 로컬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
 - * 교육내용 예시 : 창업아이템 발굴 등 창업과정, 점포경영이론, 기능교육, 세무회계 등

2

모집개요

○ (선정규모) 6개 대학 내외

※ 선정규모는 선정평가 결과, 협약 준수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(지원대상) 전문학사, 일반학사, 석사, 박사, 석·박사 통합과정 등 지역가치 창업 전문학과, 전공(부전공, 연계전공 등 포함)의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, 대학원

※ 연계전공 및 융복합학과 형태로 복수의 학과(교과)를 융합하여 전문 커리큘럼 운영 가능

○ (협약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~ '23. 12월 31일까지

※ 단, 추후 사업 운영에 따라 협약 시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**협약기간 종료 후
성과평가에 따라 협약기간 연장 가능**

○ (지원예산) 총 20억원 내외(대학별 2~5억원 차등 지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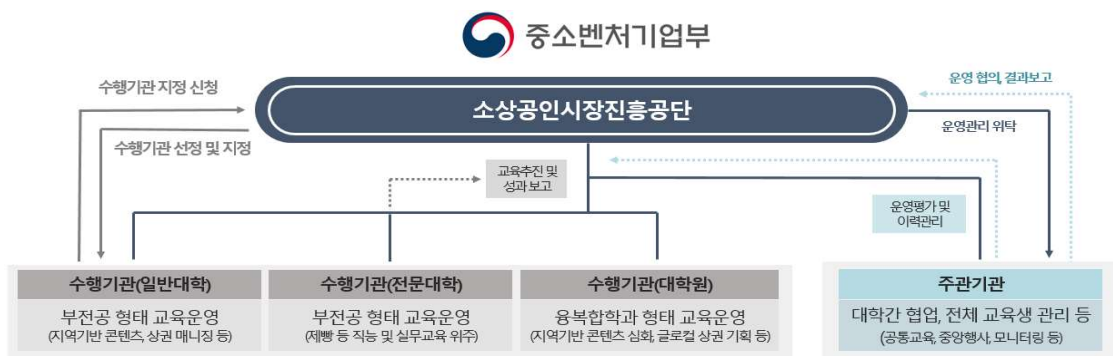
※ 대학별 지원규모는 교육생 수,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
지원하며, 향후 사업운영 및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(지원내용)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, 멘토링, 창업실습비(팝업스토어 구성·운영 등), 전담인력, 강사 인력(연구교수, 겸임교수 등 포함) 확충, 운영비 등 교육과정 지원

※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 자체 교비로의 예산편성 및 활용

○ 기관별 역할 및 추진체계

<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추진체계(안) >



<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추진주체별 역할(안) >

구분	업무
중소벤처기업부	- 기본계획 수립, 세부사업 계획 승인
소상공인진흥공단	-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운영성과 관리 - 주관기관 및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공모, 운영, 관리
주관기관	-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·관리 -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성과 및 정산관리 - 공통교육 및 중앙행사(해커톤, 성과공유회 등) 운영 -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전담사무국 운영 등
수행기관(대학)	- 로컬콘텐츠 중점대학별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 - 교육 추진 및 성과관리(연계전공부전공마이크로디그리 등 학위 취득 등) - 전담인력 및 교육인력 배치 등 - 교육생 관리

3

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에 부합하고 로컬·창업 지원역량, 로컬·창업 관련 전문인력(조직), 협업 네트워크, 인프라 등을 보유한 대학

* 운영 효율성을 위해 컨소시엄 불가

<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신청 자격 >

◆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

- ※ 대학 본교(캠퍼스 포함) 또는 분교 중 1개 기관만 신청 가능
- ※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은 '대학'(본교 또는 분교) 명의로 가능

□ 신청 제외 대상 :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 시 참여 불가

-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교육부 『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』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중소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-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최근 3년간 중소기업부 창업·성장지원사업 '협약 해약' 판정을 받은 경우
-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4

수행대학 의무 및 역할

< 유의사항 >

- 최종 선정된 기관은 각 과업 이행 시, 소상공인 언·컨택트 교육 사업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함(추후 협약 시 제공)

1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프로그램운영

- (교육운영) 대학·전문대학·대학원은 과정신설, 부전공, 융·복합학과 또는 연계 전공 등 대학(원) 특성에 맞게 과정개설 및 교육 운영

- ※ 교육은 최소 2학기 이상 반드시 운영해야 함
- ※ 사업 종료 후 교육과정 수료 학생에 대한 총장 명의의 학점·학위 인증 서류(수료증, 확인서, 졸업증명서 등)가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에 반영
- ※ 교칙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의 교과과정 편성이 어려울 경우, 차년도 편성에 대한 대학교 총장 명의의 확약서로 대체하여 지원가능(단, 미이행 시 지원금 환수 조치)
- ※ 대학·전문대학 : 부전공, 연계전공, 마이크로디그리 등
대학원 : 학과과정 신설 및 융·복합과정 등

- (교육과정 개발) 경제·세무·세부전공 등 비기술기반 청년 로컬창업가의 창업 및 로컬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융·복합적으로 구성
- (필수과목) 경영, 경제, 사회문화, 예술, 디자인, 금융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해 학생 본인의 전공과 로컬창업 관련 필수과목 수강
- (실무역량) 로컬브랜드 등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, 로컬크리에이터 멘토링, 시제품 개발, 팝업스토어 등 실무역량을 병행적으로 교육
- (비즈니스마인드)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형 교육을 운영하여 실제 로컬창업과 상권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융·복합적 사고 역량 강화
- (지역연계) 로컬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의 광역, 기초 자치단체 등과의 협업하여 창업(체험)공간 체험 등 연계방안 모색*

- ※ 연계방안 모색: 지역과 협업한 연계방안을 교육과정에 반영 등
- ※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의 수행계획 내 지자체(광역·기초) 등의 연계 및 참여를 통한 협업전략이 협약 등의 형태로 명시된 수행기관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

- (교육생 관리) 개발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생의 교육 및 실습참여, 공통교육 및 해커톤 참여 지원 등 교육생 관리

2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성과관리

- (홍보 및 모집) 로컬콘텐츠·로컬창업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생 모집 홍보

※ 목표 교육 수료생에 따라 선정평가와 예산 차등지원 시 반영할 수 있음

- (모니터링) 매학기 수행기관별 모니터링 평가 시, 사업계획서에 따른 교육 추진현황 및 실적 등 보고
- (KPI 개발·달성) 수행대학별 지역가치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KPI를 개발 및 설정*하여 협약기간 내 운영 및 달성 추진

※ 교육 수료생(학점·학위취득 자) 수는 KPI로 필수 설정

※ 대학원의 경우 일부 KPI는 가중치를 두고 평가 예정

- (사업관리) 추진현황, 운영결과, 실적 등을 월별 보고하고 사업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중간 및 최종보고 등

※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행실적 및 성과에 대해 사업기간 종료 시 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 차등 지원

- (성과대회) 로컬콘텐츠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성과에 대해 교육생별 로컬 사업아이템 및 BM 발표 등 로컬창업·콘텐츠 활성화 행사 실시

3 기타 수행 필요사항

- (사업비 정산 및 보고) 공단에서 제시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·집행하고, 공단(주관기관)으로 정산보고서 등 성과품 제출

* 수행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증빙서류 보완, 불인정,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

- (우수사례 발굴)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학위 취득 후, 교육 수요자 중 참여 성실도, 교육 후 성과창출 등을 고려하여 **BP사례 발굴 및 관리**
- (기타 사업지원) 간담회, 운영위원회, 민원대응, 관계자 현장방문 시 대응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

4 **가점사항**

- (지역연계)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, 지자체(광역·기초), 민간(기업, 단체 등) 등이 참여하여 중점대학과의 구체적인 협업전략 제시
- (학술연구) 로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등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한 인력 등의 논문 1개 이상 KCI 등재 등
- (대응자금)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추진에 대학, 지자체(기초·광역), 민간(기업, 단체 등) 등의 현금·현물로 대응자금에 대한 계획 수립
 - * 지역기반 가치 창업가 양성 교육을 위한 강의실, 시범(체험)점포, 시제품 개발비 및 교수 인력 인건비 등 교육인프라 내용으로 책정 가능

5 **사업비 지원안내**

□ 사업규모 : 지원 대학별 2~5억원 규모로 편성

- ※ 수행기관(대학) 교육비(교육 프로그램 개발, 교육생 실습비, 멘토링비 등 포함), 수행기관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
- ※ 향후 사업운영 및 협의 내용, 선정평가 결과, 실적 등에 따라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내용 및 편성기준

- **직접비**는 총 사업비의 **80% 이상**으로 편성, **간접비**는 아래 항목 중 필요한 항목만 반영하여 총 사업비의 **20% 미만**으로 편성할 것

< 주관기관 배정예산 구성(안) >

비목	구분	지원내용	예산
직접비	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육비	• 로컬콘텐츠 중점대학별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, 멘토링, 실습비, 강사비(연구교수, 겸임교수, 시간강사 등) 등	80% 이상
간접비	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운영비	• 전담인력 등 인건비(행정인력), 여비, 일반수용비, 홍보비, 업무추진비 등	20% 미만

* 향후 사업운영 및 협의 내용, 선정평가 결과, 실적 등에 따라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

- (사업책임자) PM(1인)은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로서 사업 수행 중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수행의 행정책임자 역할 수행
- (인력구성)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*은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, 로컬·창업·교육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자를 전체 인력의 50% 이상으로 구성

* 전담인력은 타 지자체, 중앙부처 등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'로컬콘텐츠 중점대학' 사업만을 100%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

6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□ 선정규모 : 6개 대학 내외

※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□ 선정절차 및 일정

< 선정절차 및 일정 >

(1단계) 서면평가	(2단계) 발표·현장평가	최종선정 및 통보	협약체결
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계획서 평가 (평가위원회)	사업계획서 발표(PT) 및 현장평가 (평가위원회)	결과 통보	협약일로부터 (2년간)
'23. 2월 중	'23. 2월 중	'23. 2월 중	'23. 2월 말

* 향후 사업운영 및 협의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- (평가대상) 공모 참여 기관 중 자격요건 적합 기관에 한하여 평가

검토요건		검토결과
기본요건 충족 (서류평가)	모집기준 부합 여부	적부판정
	필수서류 제출 여부	

- (평가 방법) 2단계 평가(①서류평가→②발표평가)로 운영하며, 서류 평가 점수 30%, 발표평가 점수 70%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

* 단계별(서류 및 발표)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

-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「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평가위원회」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
- (서류평가)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

- (현장실사) 대학 및 협력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등 신청기관이 기 제출한 서류의 사실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및 평가

* 제주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(발표평가) 수행기관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종합역량평가 실시

< 발표평가 유의사항 >

- ※ 신청기관은 사업책임자(PM)가 평가에 참석하여 직접 발표하고 질의에 답하여야 함
- ※ 평가시간은 35분(발표 20분, 질의응답 15분) 내외로 진행하고 평가장은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하며, 코로나19 상황 및 평가 운영에 따라 평가시간, 평가방법 변동 가능
- ※ PM은 동 사업 프로젝트 총괄을 담당하는 실무자서, 공고일 기준 신청기관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여야 함(평가 당일 재직증명서, 신분증 지참 필수)

- (평가위원회)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
- 최종 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

* 예 : 평가위원이 총 7인일 경우,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인 점수의 평균값

- 최종 평가 점수가 소수점 이하 발생 시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

○ 평가지표

<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선정평가 기준(안) >

평가항목			평가배점		
기본요건 충족여부	- 신청자격 충족 여부(신청대학 기준 및 신청제한 해당 여부 등) - 신청요건 충족여부(전담인력100% 1인, PM 전임교수 여부)		적/부		
서류평가	정량평가	-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	10점	20점	
		-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·성과	10점		
	정성평가	추진역량	- 본 과업에 대한 대학의 사업 추진 의지 - 본 사업목표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- 교수진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·운영 계획 - 시설 및 기자재 확보 방안	30점	30점
		사업수행전략	-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비전 및 추진전략 - 로컬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- 교육생 모집 방안 - KPI의 적정성 및 달성 방안의 구체성	50점	50점
		가점	- 지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로컬콘텐츠 중점대학과 구체적인 협업전략 제시(협약시 첨부 시 인정)	최대 3점	최대 5점
			- 대학 및 협력기관 등의 현금·현물로 대응자금 제출 시	최대 2점	
합 계			105점		
평가항목			평가배점		
발표평가	사업목표의 우수성	- 사업목표의 체계적 구성 및 실현가능성	5점	10점	
		- 사업추진체계의 타당성 및 기관 역할의 구체성	5점		
	사업수행전략	- 교육과정(전공부전공연계전공마이크로디그리 등) 개설의 적정성	10점	10점	
		- 교육생 모집 및 유치계획의 타당성	10점	10점	
		- 로컬생태계 조성, 지역기반 예비창업자 양성 등을 위한 계획 및 로컬콘텐츠(창업) 교육의 특성화 수준	30점	30점	
		- 민·관·산·학 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	10점	10점	
	사업운영관리	- 지역별 성과대회, 행사주간 등 사업 성과 극대화 전략	20점	30점	
		- 추진일정, 예산편성의 구체성 및 적절성	10점		
가점	- 제시된 과업 외 추가 제안사항의 매력도 및 실현 가능성		5점	5점	
합계			105 점		

* 상기 선정평가 기준(안)은 실제 평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신청·접수기간(예정) : 2023. 1. 30. ~ 2023. 2. 6(월), 12:00까지 “접수완료”

* 향후 사업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: 소상공인 언·컨택트 교육 메일(startup@semas.or.kr) 송부

* 향후 선정 이후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등록 必

□ 신청서류 :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 및 작성하여 신청

구분	제출서류명	제출수량	비고
1	신청공문(신청대학장 직인 공문)	1부	-
1	신청서	1부	본공고 시 최종확정
2	사업계획서	1부	본공고 시 최종확정
3	사업자등록증명원	1부	-
4	법인등기부등본	1부	-
5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	각 1부	-
6	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	1부	-
7	실적증명서	각 1부	본공고 시 최종확정
8	참여인력 이력사항(재직증명서 첨부)	각 1부	본공고 시 최종확정
9	서약서	1부	본공고 시 최종확정
10	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	1부	별지 [서식6]
11	발표자료	1부	자체 양식
12	협력기관 참여확인서(협약서 등)	1부	자체 양식

*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

- 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을 통해 사업 등록→교부→집행→정산→반납→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
- ②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
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- ③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, 이상 발견 시 탈락처리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및 협약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④ 신청대학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⑤ 선정된 기관은 공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
- ⑥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대학의 부담으로 함
- ⑦ 동 사업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,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지 아니하며,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⑧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⑨ 수행기관은 사업비(정부지원금)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
- ⑩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,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

- ⑪ 사업 신청은 신청대학의 대표자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* 신청기관의 장
- ⑫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(전자메일 등)하며, 신청기관 미확인·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⑬ 동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(연락처, 담당자명)에게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외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
- ⑭ 신청 및 선정기관은 소상공인 언·컨택트교육 운영지침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(추후 협약 시 제공)
- ⑮ 사업 운영 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⑯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, 정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⑰ 유사 취지의 정부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예산 등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중복지원 최소화를 위해 참여의 제한, 예산 감액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⑱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을 시, 선발하지 않거나 선정 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음
- ⑲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
- ⑳ 모집공고 및 신청서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본 게시글을 통해 공지될 예정임

9

문의처

- (유선문의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(042-363-7730, 7737)